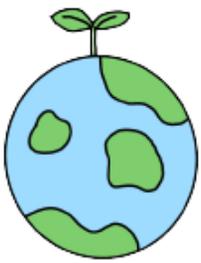


2023

# 안전·환경 교육과정/사업안내



환경안전교육원

Korea Environmental and  
Safety Institute

Greeting

## 환경안전교육원 은

환경안전교육, 산업안전교육, 환경·안전분야 진단 등의 사업을  
주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입니다.

환경·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기관은  
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 
전문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 
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 
힘 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
환경안전교육원 임직원 일동

# Contents

## 01 교육안내

- **산업안전보건법** \_\_\_\_\_ **5**

### 1. 직무교육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(신규/보수)
- 안전관리자 직무교육(신규/보수)
-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(신규/보수)
-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(보수)

### 2. 안전교육

- 관리감독자 안전교육(제조업/서비스업)
-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교육(제조업/서비스업)

- **중대재해처벌법** \_\_\_\_\_ **11**

- 경영책임자, 최고안전책임자교육
- 안전보건책임자, 관리자교육

- **화학물질관리법** \_\_\_\_\_ **13**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교육
-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

## 02 사업안내

- **환경안전분야 컨설팅** \_\_\_\_\_ **15**

1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2.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
3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
4.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

- **산업안전분야 컨설팅** \_\_\_\_\_ **20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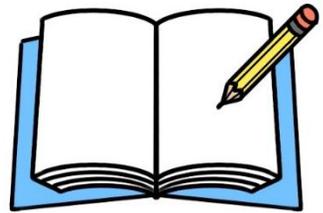
1. 안전보건경영시스템
2. 공정안전보고서
3. 유해위험방지계획서
4. 위험성평가
5. 자율안전확인신고
6. 방폭안전진단
7.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# 01 교육안내

산업안전보건법

중대재해처벌법

화학물질관리법



#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 
 지위에 선임된 사람이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 
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



## 1. 직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)

교육신청 : <https://www.dutycenter.net/>

대상자	업종	이수시간	관련법령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(신규/보수)	건설업, 제조업 및 기타업	6	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
안전관리자 직무교육(신규/보수)	건설업, 제조업 및 기타업	34/24	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
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(신규/보수)	-	34/24	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
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(보수)	제조업 및 기타업	8	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



## 2. 안전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)

교육신청 : <http://www.koesti.or.kr>

대상자	업종	이수시간	관련법령
관리감독자 법정교육	제조업 및 기타업	16	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
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교육	제조업	16	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 24조 3항
	서비스업	8	

※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은 요청시 사업장별 출장교육이 가능합니다.

##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(신규)

- ▶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 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

교육시간	6시간/1일 (09:00~16:00)
교육대상	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최초 선임된 자 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-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·보건조치에 관한 사항

### 교육 신청

-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([www.dutycenter.net](http://www.dutycenter.net))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

### Q&A

Q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나요?

-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사람입니다.

Q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며, 선임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.

##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(보수)

- ▶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으로 리더십과 안전경영방법을 교육하여 사업장 내 효과적인 안전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과정

교육시간	6시간/1일 (09:00~16:00)
교육대상	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- 산업안전·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- 자율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### 교육 신청

-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([www.dutycenter.net](http://www.dutycenter.net))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

##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(신규)

-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

교육시간	34시간/ 5일
교육대상	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 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점검 ·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</li> <li>-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(보수)

- 안전관리자가 사업장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

교육시간	24시간/ 3일
교육대상	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관리자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· 평가 · 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# 교육 신청

-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( [www.dutycenter.net](http://www.dutycenter.net) )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

##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(신규)

- ▶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

교육시간	34시간/ 5일
교육대상	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위탁업무 신규 종사자 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점검 ·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</li> <li>-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(보수)

- ▶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

교육시간	24시간/3일
교육대상	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· 평가 · 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# 교육 신청

-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( [www.dutycenter.net](http://www.dutycenter.net) )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

##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(보수)

-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

교육시간	8시간/1일 (09:00~18:00)
교육대상	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(3개월 이내)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·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</li> <li>- 기계·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·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ul>

### 교육 신청

-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([www.dutycenter.net](http://www.dutycenter.net))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

### Q&A

#### Q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.
  - 대상업종 : 제조업/임업/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/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/환경정화 및 복원업

#### Q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

-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

#### Q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

- 안전보건교육 실시,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, 건강진단,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,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, 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
#### Q. 상시근로자수 산정

-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

## 관리감독자 법정교육(제조업 및 기타업)

-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

교육시간	16시간/ 2일
교육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안전보건법(제16조)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</li> <li>•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</li> </ul>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유해 ·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작업공정의 유해 ·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-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교육

- 위험성평가 개요, 단계별 수행방법,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

교육시간	16시간/2일(제조업) , 8시간/1일 (서비스업)
교육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험성평가 업무담당자</li> </ul>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험성평가 개요</li> <li>-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</li> <li>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</li> <li>- 위험성평가 실시규정</li> <li>- 업종별 위험성평가1</li> <li>- 업종별 위험성평가2</li> </ul>

### 교육 신청

-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([www.koesti.or.kr](http://www.koesti.or.kr))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

### Q&A

Q.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시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여부

-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 고시, 제2020-53호)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.
-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제조업 16시간(이론 8시간, 실습 8시간), 기타업종 8시간(이론 8시간)으로 운영됨

Q.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여부[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('22.08.31, 기재부) 제15조 위험성평가]

- 10 - 실시대상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



## 중대재해처벌법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중대재해란 ?

1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2.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
3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



대상자	이수시간	교육방법
경영책임자, 최고안전책임자	4	집체
안전보건책임자, 관리자	16	

## 경영책임자, 최고안전책임자 교육

-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습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인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

교육시간	4시간/ 1일
교육대상	사업을 대표 ·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자,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·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대재해처벌법 개요</li> <li>-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</li> <li>-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분야별 적용</li> </ul>

- 교육 신청** •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([www.koesti.or.kr](http://www.koesti.or.kr))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

## 안전보건책임자, 관리자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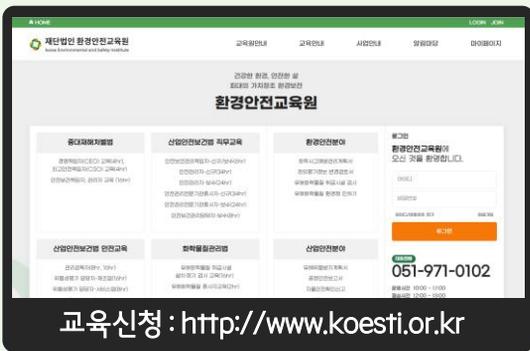
-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을 돕는 실무 교육과정

교육시간	16시간/ 2일
교육대상	안전 · 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, 전담조직 내 담당자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대재해처벌법 개요</li> <li>-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</li> <li>- 안전보건경영시스템</li> <li>-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분야별 적용</li> <li>- 주요의무사항 이행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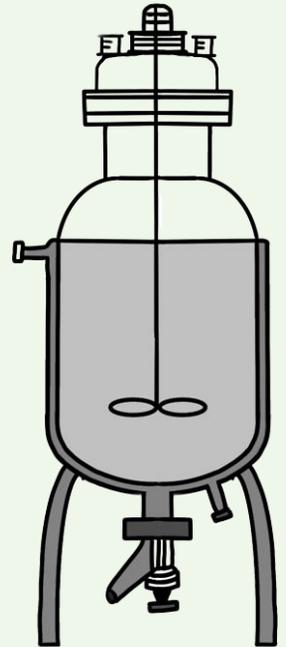
- 교육 신청** •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([www.koesti.or.kr](http://www.koesti.or.kr))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

## 화학물질관리법

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,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
교육신청 : <http://www.koesti.or.kr>



과정명	관련법령	이수 시간	교육 방법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정기검사교육	화학물질관리법	16	집체
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	화학물질관리법	2	

##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정기검사교육

-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운영 시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설치, 정기검사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전문성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정

교육시간	16시간/ 2일
교육대상	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,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급시설의 개요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</li> <li>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</li> <li>- 사전서면 검사자료 사례 및 작성방법</li> <li>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우수사례</li> <li>- 화학사고 사례 및 발생 시 조치요령</li> </ul>

- 교육 신청** •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([www.koesti.or.kr](http://www.koesti.or.kr))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

##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

- 교육·훈련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제고 및 누출 등의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숙지를 위한 과정

교육시간	2시간/ 1일
교육대상	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,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</li> <li>-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</li> <li>- 화학사고대비·대응 및 누출 시 응급조치</li> <li>-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방법</li> <li>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해</li> </ul>

- 교육 신청** •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([www.koesti.or.kr](http://www.koesti.or.kr))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

# 02 사업안내

환경안전분야 컨설팅

산업안전분야 컨설팅



## | 환경안전분야 컨설팅

### 1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

### 2.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

- 취급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이유로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

### 3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

-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

### 4.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

-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방환경관서에 영업허가를 받는 제도



# 1. 화학사고관리에방계획서(화관서)

제출대상 사업장	1군 사업장	화관법 시행규칙 [별표 3의 2]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	2군 사업장	화관법 시행규칙 [별표 3의 2]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

## 설비 대상

구분	분류	시기,주기	
		규정수량	소량기준
개요도	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사업장 기준</p> <p>상위규정수량 (UT)</p> <p>↓ 1군</p> <p>↑ 2군</p> <p>하위규정수량 (LT)</p> <p>↓ 면제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계획서 작성 내용</p> <p><b>1군</b> [기본정보] [장외평가정보] [내·외부 비상대응계획] [지역사회고지]</p> <p><b>2군</b> [기본정보] [장외평가정보] [내부 비상대응계획]</p> </div> </div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단위설비 기준</p> <p>↑ 시나리오 대상</p> <p>시나리오 소량기준</p> <p>↓ 시나리오 제외</p> </div>
	신청 기준	<p>단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</li> </ul> <p>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</li> <li>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</li> </ul>

## 제출시기

### 신규제출

- 제출시기 : 설치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제출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(규칙 별표4 비고 제2호)

### 변경제출

- 제출시기 :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
-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
  - ①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
  - ②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  - ③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
  - ④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
  - ⑤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·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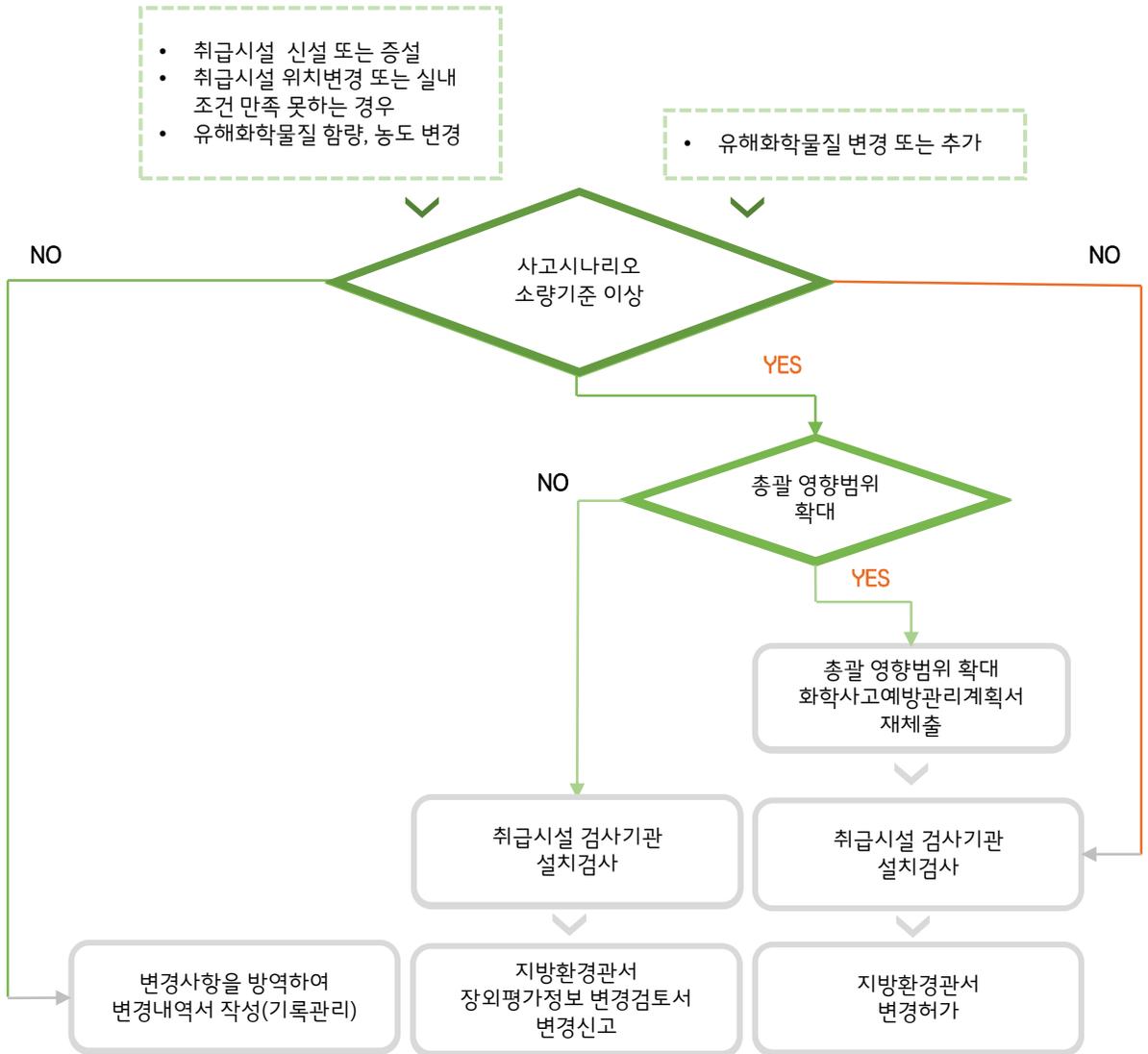
※총괄영향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

### 재제출

- 1·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(법 부칙 제3조)
-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(작성 규정 제11조)
  - ▶최초 적합통보를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
    -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(작성 규정 제11조)
  - ▶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

## 2.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

###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판단



※ 별지 제2호 서식  
[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]

[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(제9조 및 제19조 관련) ]

성상	유해성 분류	규정 수량
고체	유해성 구분 없음	2,000kg
액체	유해성 구분 없음	400kg
기체	독성구분*1	5kg
	독성구분 2	5kg
	독성구분 3	100kg

- 「화학물질의 분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
- 급성 독성이 없거나 급성 독성이 구분4인 경우는 100kg 적용

### 3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

#### 검사 및 안전진단의시기/주기

구분		시기/주기	
설치검사	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	
정기 검사	영업허가 대상인 경우	1년마다(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)	
	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	2년마다(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)	
수시 검사	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	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	
	화학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	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	
안전 진단	설치/정기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	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	
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등급	가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
		나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
		다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
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	매 12년		

#### 검사기관

기관명	관할구역
한국환경공단	전국 ( <a href="https://www.safechem.or.kr/">https://www.safechem.or.kr/</a> 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전국 ( <a href="https://www.kosha.or.kr/cheminsp/">https://www.kosha.or.kr/cheminsp/</a> )
한국가스안전공사	전국 ( <a href="https://cyber.kgs.or.kr/">https://cyber.kgs.or.kr/</a> )

#### 검사방법

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 검사 실시

####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



## 4. 유해화학물질 환경청인허가

**관련법령**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(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)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)

###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

-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: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
-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
- 유해화학물질 보관·저장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, 사용,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·저장하는 영업
-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(항공기, 선박,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)하는 영업
-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(洗滌)·도장(塗裝)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

###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영업허가대상

사업장 위치	물질 구분	연간 사용량
상수원 보호구역 밖	유독물질 (사고대비물질 제외)	연간 120톤 이상
특별 대책지역 내		연간 60톤 이상
지구단위계획구역(주거형 제외), 전용공업지역 내		연간 240톤 이상
상수원 보호구역 내, 특별 대책 지역 밖	제한물질	연간 60톤 이상
상수원 보호구역 내, 특별 대책 지역 밖	유독물질 겸 사고대비물질	연간 100kg 이상
상수원 보호구역 내, 특별 대책 지역 밖	사고대비물질 (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)	소량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작성

###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 흐름도



## 산업안전분야 컨설팅

### 1. 안전보건경영시스템

-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

### 2. 공정안전보고서

-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행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

### 3. 유해위험방지계획서

-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

### 4. 위험성평가

-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

### 5. 자율안전확인신고

-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

### 6. 방폭안전진단

-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, 증기,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

### 7.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-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



# 1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(IOS 45001, KOSHA MS)

## 안전보건경영이란?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(IOS 45001)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(ILO)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체제로,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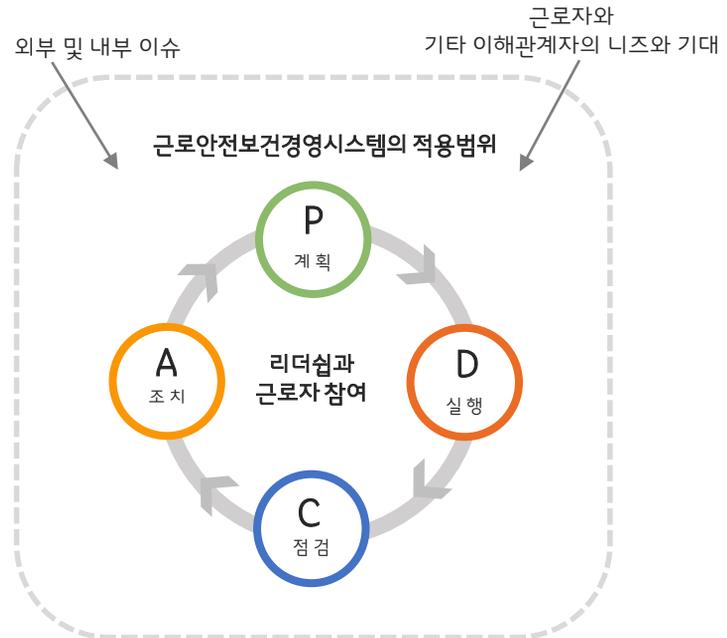
## 인증심사항목

-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(27개 항목)
-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(14개 항목)
-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(6개 항목)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

## 인증취득효과

-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·보건 경영시스템 구축
-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
-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
-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
-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, 생산성 및 품질향상,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
- 내·외부 고객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

## 안전보건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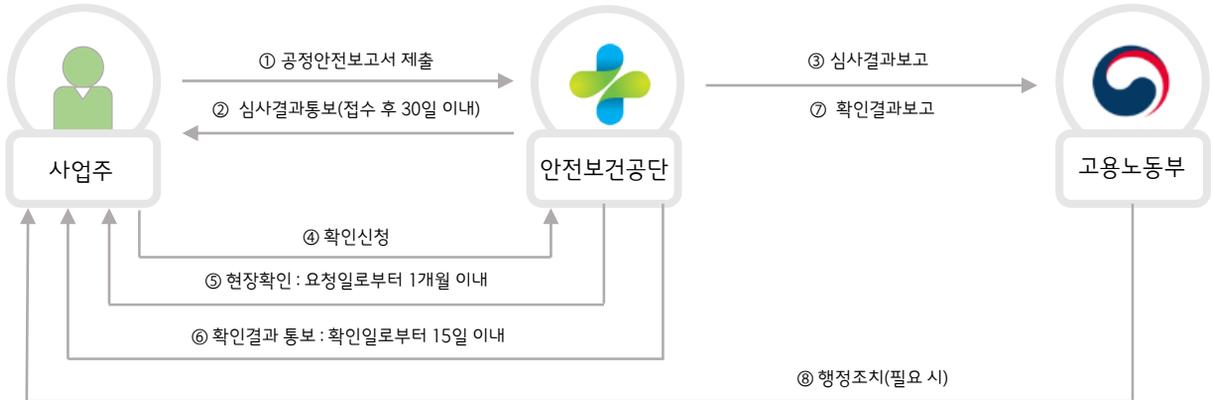
- ① 계획 (PLAN) : 사업장에서의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안전보건목표와 프로세스를 수립한다.
- ② 실행 (DO) : 계획에 따라 프로세스를 실행한다.
- ③ 점검 (CHECK) : 기업 조직의 의지, 안전보건목표와 응용기준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한다.
- ④ 조치 (ACT) :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## 2. 공정안전보고서

###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)

### 심사 및 확인 절차



### 제출대상 · 시기 · 서류 · 방법

제출주체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
제출 시기: 착고일 30일 전

제출서류: 1.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(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-55호 별지 1호 서식)  
2. 공정안전보고서 2부

제출방법: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>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>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>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

※ 공단 홈페이지 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> 사업안내/ 신청 > 전문기술 >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

※ 관련 법령, 신청서 및 제출 서식, 작성 예시집 등 제공

###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

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

업종	업종분류 코드	업종	업종분류 코드
원유정제처리업	19210	질소 화합물, 질소/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조실 화학비료 제조업	20311
기타 석유정제출 재처리업	19229	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(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	20312
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20111	화학 살균/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농약 원제제로만 해당)	20321
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	20202	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	20494
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 13,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·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

이상 제조·취급·사용·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

### 3. 유해위험방지계획서

####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(유해,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),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# 제출대상 사업장

업종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(중분류)	업종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10***	식료품 제조업	261**	반도체 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· 가구제외	262**	전자부품 제조업
20***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· 의약품 제외	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22***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32***	가구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	33***	기타제품 제조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		

#### 설비 대상

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

- ①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
- ② 화학설비
- ③ 건조설비
- ④ 가스집합용접장치
- ⑤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

#### 제출자 및 제출시기

**제출 주체 :**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
**제출 시기 :**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

'해당 작업시작'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· 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,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, 기존공장, 임대공장,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

# 4. 위험성평가

##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

## 위험성평가 실시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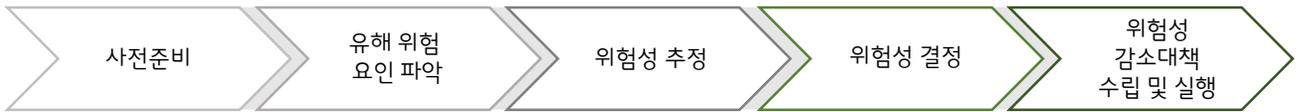
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

-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
- ② 관리감독자
- ③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
-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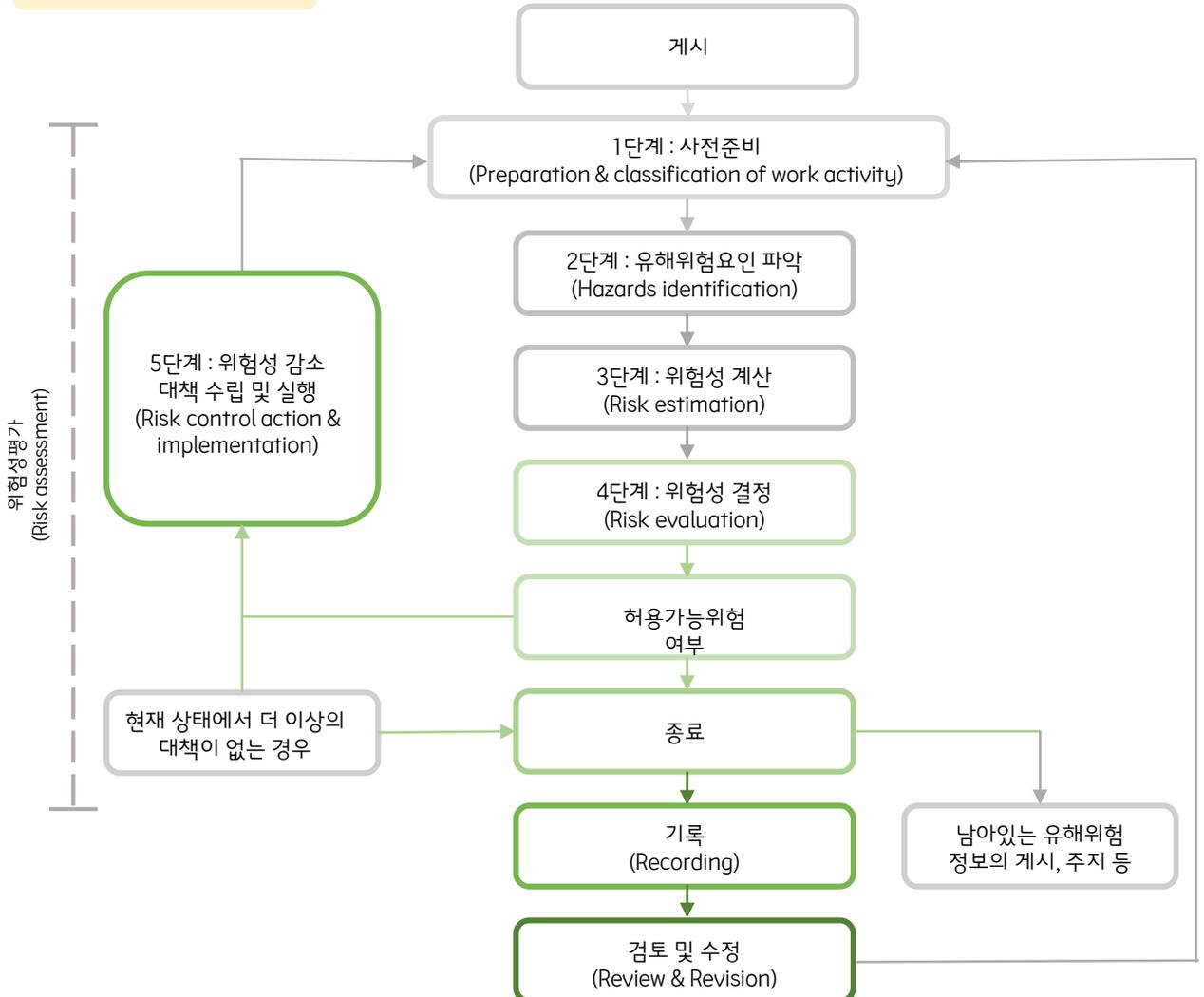
①~④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



## 위험성평가 절차



##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절차



## 5. 자율안전확인신고

###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 (자율안전확인 신고)~제92조 (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)

### 자율안전확인신고란?

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· 기구 등을 제조(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)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

### 법적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(자율안전확인 신고)~제92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)
- 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0호)
- 위험기계 ·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37호)

### 신고제출서류

- 자율안전확인신고서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)
- 제품의 설명서
-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/기구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
: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· 검사 결과서 (시험 · 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 ·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 · 검사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)
- 사업자등록증 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)<sup>1)</sup>

## 6. 방폭안전진단

###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 (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)

### 제출대상

전기설비의 방폭(폭발방지)이란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것

### 근거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 (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)

### 대상

- 기설치된 방폭설비 진단
- 신설하고자 하는 방폭설비에 대한 진단 및 시공감리
-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·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
- 인화성 고체를 제조 · 사용하는 장소

### 방폭진단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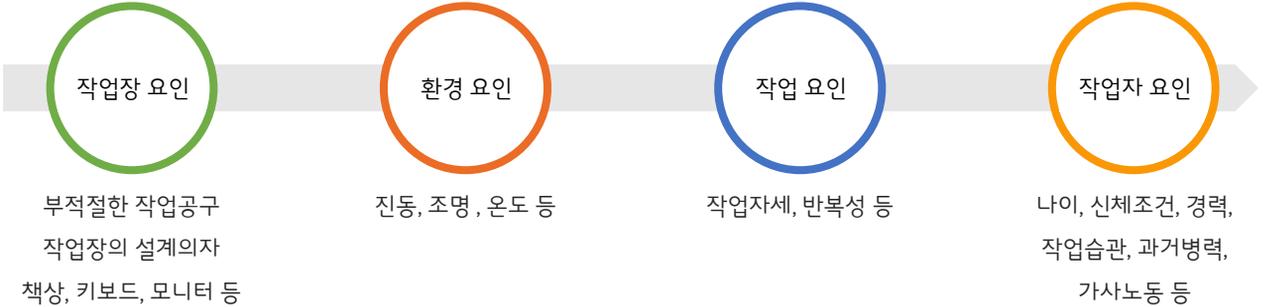
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C IEC 60079-10-1에 따른 폭발위험지역 구분
-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

# 7.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

##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(보건조치)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

##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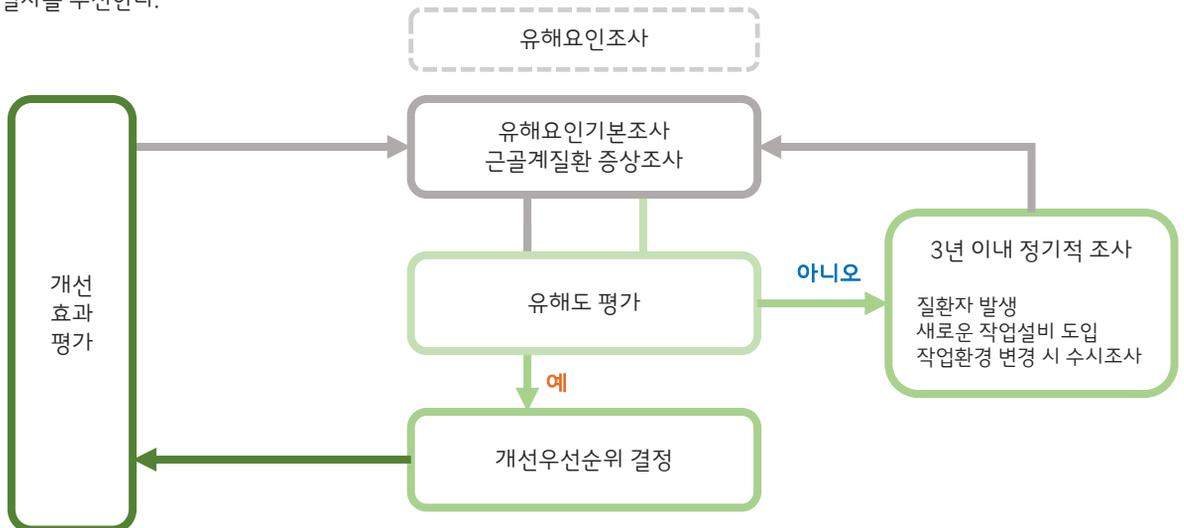


## 유해요인조사 시기

- 정기 유해요인 조사 :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
- 수시 유해요인 조사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
-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· 설비를 도입한 경우
-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

## 유해요인조사방법 및 절차

-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.
-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한다.
-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(작업분석 · 평가)도구를 이용한다.
-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.



Tel . 1800-8133

Fax . 070-7611-6133

E-mail . aestiz99@gmail.com

Home . www.koesti.or.kr

---

주소 .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76, 6동 204호



환경안전교육원  
홈페이지  
QR code

